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2. 3. 28.
제공자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
과 장 : 윤 영 렬
사무관 : 박 래 응
전 화 : 031)463-1589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2P)

이 자료는 2012년 3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FTA 등 시장개방 대응 수입 농식품 원산지관리 대책 강화

- 기동단속반 확대편성 및 쇠고기 등 소비자 관심품목 상시 단속체계 운영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◇ 상시 기동단속인력 및 긴급단속반 확대편성 · 운영
 -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편성
 - 긴급단속반 250명을 추가 확보하여 특별단속에 전격 투입
- ◇ 관세청,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의 통관 · 검역정보를 공유하여 수입급증 · 소비자 관심 품목 특별관리
 - 쇠고기, 돼지고기, 배추김치, 쌀, 닭고기, 고추, 마늘 등 집중관리
 - 공휴일 · 야간단속 강화로 원산지 사각지역 방지
- ◇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추가 지정하여 민간감시기능 및 자율적 원산지표시 유도
 -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확대 위촉: ('11) 6천명→('12) 7→('15) 10
 -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확대: ('11) 1,600개소→('12)3,000→('15) 10,000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'품관원', 원장 나승렬)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원산지 기동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관리를 강화 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.

□ 대도시 지역의 상시 기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,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전국에 걸쳐 일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긴급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.

○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124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품관원 직원 중에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250명을 선발하여 긴급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다.

○ 전국적인 단속이 필요할 경우 상시 기동단속반과 긴급단속반을 동시에 투입, 400명으로 확대하여 농식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또한, 관세청,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의 통관 · 검역정보를 공유하여 수입급증 · 소비자 관심 품목을 특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 가격변동이 크거나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정보를 수집하여 통관시점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 할 계획이다.

<'11년 주요 적발품목>

돼지고기(1,347건), 배추김치(1,171), 쇠고기(690), 쌀(210), 닭고기(193)

□ 아울러,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원을 대폭 늘려 민간 감시기능을 확충하고, 원산지표시 우수관리업체도 연차별로 확대 하며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○ 원산지표시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현재 6천명에서 15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 위촉하고, 원산지지킴이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민간감시 기능을 활성화 하고,

○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도 현재 1천6백개소에서 '15년까지 1만 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한편,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스마트폰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업소 위치가 On-Line상에 표출 되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품관원 관계자는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 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, 탕용으로 확대 하며,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.

[참고자료]

1. 원산지 기동단속인력 및 긴급단속반 확대편성 운영

□ FTA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원산지관리 대폭 강화

○ 원산지 기동단속인력 및 긴급단속반을 확대편성(124명→400)

－ 서울·부산·인천 등 대도시 사무소 기동단속반 확대(124명→150)

－ 품관원 각 지원에 원산지 긴급단속반을 추가 편성·운영(250명)

＊ 긴급단속반 : 수입농산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에 따라 전국적인 원산지 단속이 필요한 경우 투입되는 단속반

○ 단속 취약시간 및 사각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

－ 공휴일·야간, 유원지·휴게소 등 공공장소 대상

○ 시기별 특별단속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

＊ 제조·공급업체부터 유통단계 추적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실시

2. 2011년도 농산물 원산지 단속실적

□ 단속실적 총괄

구분	단속 연인원	조사 장소	단 속 실 적					
			합계	거짓표시			미표시(과태료금액)	
				계	행사 입건	고발	개소	금액
	명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개소	천원
2011년(A)	87,528	364,298	4,927	3,180 (21,794톤)	3,114	66	1,747 (1,176톤)	803,329
2010년(B)	111,628	391,116	4,894	3,072 (24,600톤)	2,991	81	1,822 (709톤)	789,633
대비(A/B)%	78.4	93.1	100.7	103.5	104.1	81.5	95.9	101.7

○ 2011년 단속횟수 : 36,459회, 영수증 미비치 : 27개소 5,400천원 과태료부과

3.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확대

☐ 민간의 원산지표시 자율참여 확대 및 감시기능 강화

- 원산지표시 자율참여 확대를 위한 자율표시 우수업체 확대 지정
 - 우수업체 확대계획 : ('11) 1,600개소 → ('12) 3,000 → ('15) 10,000
- 감시 활동이 적극적인 명예감시원을 정예요원으로 지정 참여 활성화
 - 명예감시원 확대계획 : ('11) 6,000명 → ('12) 7,000명 → ('15) 10,000
- * 원산지지킴이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의욕 고취

4.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주요내용

☐ 대상 :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가공판매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조리 판매업(이하 '음식점'이라 한다)을 2년 이상 한 업체

☐ 신청 : 매년 3월·9월 신청서접수(방문, 우편 등)

☐ 선정기준

-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이 없고, 표시율 100%인 업체
- 원산지표시 관리부서 및 관리인력(1명이상) 보유
- 개별 단위업체를 대상으로 하며,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
 - 유통업체는 연면적 165㎡이상, 축산물전문판매장 등은 50㎡이상,
 - 가공업체는 영업장 신고면적이 900㎡이상
 -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면적제한 없음
- * 선정기준은 생산자·소비자·판매업체·관계기관 등이 참여하여 설정

☐ 우수업체마크 부여

- 선정업체에 『원산지표시 우수업체(우수음식점)』 마크 사용승인

☐ 향후계획

-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 지원